「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4. 6. 9(월)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나. 회부일자 : 2014. 6. 20(금)

다. 상정일자 : 2014. 6. 20(금)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이장자녀중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금액을 현재 2년제와 4년제 대학생에 대하여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을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장학생의 추천에서 선발 및 심의 기간을 명시, 장학금의 적기 지급을 통해 이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는 이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초 시행 시점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지급되었음.

○ 장학금은 학기별로 **중·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의 전액**을, **2년제**

대학생은 70만원, **4년제 대학생은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성적은

- 중·고등학생은 직전학기 학과 성적이 **"미"**이상,
- 대학생은 학과성적 4.5만점에 **2.5이상**인 사람
- 기능·체육·예능 부문에서는 도 단위 이상인 대회에 참가하여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을 대상

으로 하고 있어 성적에서는 이장의 사기진작 취지를 살려 조례 개정을 통해 수혜의 확대하고 있음.

○ 예산액과 지급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도 당초예산 117,980천원이 편성되어 2014년 상반기 54명(고등학생10명, 2년제 12명, 4년제 32명)에게 46,000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 금번 조례 개정은 이장의 자격에서 확정시점 기준인 "현재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개정하여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읍면장이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는 시점도 현행 **"매학기 선정"** 으로 되어 있어 불명확하였으나 **"매학기 개시 1개월 이내"**로 명확히 하였으며

2년제 대학생에게 70만원, 4년제 대학생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4년제 금액인 10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혜의 폭을 조금이나마 확대하고 있음.

○ 2년제 대학생을 4년제로 대학생 기준인 10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1년 20명 이내로 6,000천원이내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는 현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정하고 이장의 사기진작 제고와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중 “현재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를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로 한다.

제3조(추천) 중 “매 학기 선정하여”를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선정하여”로 한다.

제6조(장학금액) 중 “2년제 대학생에게는 70만원, 4년제 대학생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를 “대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